

江原道 火田整理事業에 隨伴되는 問題點分析에 關한 研究*¹

胡 乙 瑛*²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blems Involved in the
Project to Rehabilitate the Illegal Field Burning
Cultivators in Gangweon Do*¹

Ho Ul Yung*²

Since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 so-called illegal field-burning cultivation is directly implicated in the causes of forest devastation, land erosion, and drought and flood, thus, barring the nation from a well-balanced economic growth, the policy to exterminate its practice must have the topmost priority.

Eighty percent of Gangweon-do is mountain forests and naturally of all others this province has the largest area of illegally burned hill-side farminglands, stubbornly regarding the provincial development policy as well as directly causing tremendous forest damages.

In 1965 a 7-year plan mapped out to rehabilitate these gypsy type field burning farmers only to be suspended in 1968 to give way to the mandatory project of clearing the isolated farmsteads set in deep mountain to circumvent the guerilla forces signaled by the so-called Samcheok-Uljin area infiltration. In the meantime, new hordes of roving farmers burned the forests, working a renewed havoc. To cope with this situation, the provincial government, taking the year 1973 as a planning year, launched another three year project (1974-76) and has been enforcing the rehabilitation project mobilizing the whole administrative power.

Whether or not this project will succeed solely depends upon whether the forcedly rehabilitated roving farmers can really establish self-supporting homesteads. Among the various difficulties facing the newly established homesteaders are:

- (1) First of all, the homesteaders must be given money-earning jobs.
- (2) Financial supports or subsidies must be provided them with which to establish self-supporting homesteads.
- (3) Private enterprises as well as public organizations must offer them jobs with priority.
- (4) The rehabilitated rovers themselves must establish self-supporting homesteads before expecting the external assistance.
- (5) The rehabilitated rovers themselves must have the spirit of self-help, welcoming all levels and all kinds of jobs.
- (6) The rural revitalization movement must expand the self-help reconstruction projects to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work.
- (7) All citizen in the province must receive and protect them with brethren love.
- (8) The evacuated burned-forests must be reforested with the principle of "best trees to the best lands".
- (9) The seedlings of species that the forest owners select must anyhow be secured and supplied

*¹ Received for Publication November 10, 1975

*² 江原大學 Gangwe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10)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village forestry association must be strengthened to take effective care of the reforested burned-forests.

火田耕作은 山林을 荒廢化하고 國土를 漫蝕하여 旱水害를 誘發시키며 國家發展과 國民經濟向上에一大沮害要因의 作用을 하고 있음으로 이를 根絕시킴은 國家的使命으로 되어 있다.

江原道는 全道面積의 8割이 山林으로 占하고 있어 火田面積이 他道에 比하여 가장 많이 分布되고 있다. 이로 因한 山林被害은 莫甚하며 道民의 經濟發展이 遷延되고 있어 65년부터 7個年計劃으로 火田整理事業에 着手하였으나 68年 三陟, 蔚珍共匪浸透事件으로 山岳地帶의 獨家村整理事業이 國家安保上 時急을 要하게 되어 本事業은 不得已 中斷되었다.

그後 새로운火田을 冒耕하는 者가 繢出하여 山林破壞가 甚함으로 73年을 準備年度로 하고 74~76年의 3個年計劃으로 火田整理事業을 完結할 目標下에 道行政力を 總動員하여 強力하게 推進하고 있다.

本事業의 成敗는 火田整理로 生計危脅에 直面하는 火田民에 對한 自立基盤造成與否에 달려있으며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解決되어야 한다.

- 1) 移住火田民에 對한 就業定着이 成就되어야 한다.
- 2) 現地定着火田民에 對한 自立基盤造成에 必要한 最小限度의 支援이 保障되어야 한다.
- 3) 公共機關 및 企業體는 火田民에 對한 就業就勞를 優先的으로 受容하여야 한다.
- 4) 火田民은 就業就勞로 生活基盤이 確立되어야 한다.
- 5) 火田民自身이 自助自立精神이 鼓吹되어야 한다.
- 6) 새마을 事業과 連結된 自助勤勞事業을 擴張시켜 就勞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 7) 道民은 火田民에 對한 物心兩面의 支援으로 同胞愛를 發揮하여야 한다.
- 8) 火田地造林은 適地適樹가 履行되어야 한다.
- 9) 山主가 願하는 樹種의 苗木을 確保供給하여야 한다.
- 10) 山林契의 組織機能을 強化하여 火田造林地의 管理에 徹底를 期하여야 한다.

I. 緒 言

古來로 山林에 放火하여 農耕地로 利用한 것은 原始農業段階에 있어서 世界共通의 現象이 있으며 人口密度가 增加하여 平地의 農耕地가 狹小하여 갑에 따라 奧地山間地帶로 移行하여 火田耕作은 擴大되었다. 이로 因한 山火의 被害와 土砂流出의 被害로 國土保全의 危脅이 漸增하게 되자 世界各國은 中世以後부터 國法으로 火田禁止令을 發布하여 山林保護策을 講究하게 되었으며 先進林業國에서는 오래前부터 山林의 保全이 國力의 伸長과 直結되고 있다는 것에 覺醒하여 亡國의 인 火田冒耕이 根絕되고 있으나 後進國에서는 尚今 貧困과 無知로 火田冒耕을 持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火田耕作은 新羅, 高麗, 李朝時代를 通하여 繼承되어 오고 있으며 特히 李朝時代에는 火田의 被害가 甚하여 禁養하여 오던 禁山封山에 까지 侵入하게 되자 國法으로 火田禁止令을 發布하여 團束하였으나 四色黨爭으로 因한 政治的昏迷로 그 實効를 거두지 못하였다¹⁾.

日帝 36年間의 虛政은 韓民族을 貧困과 無知로 몰아 넣어 平地農業에서 山地農業으로 移行하는 者가 繢出

하여 火田人口가 增加하였으나 이에 對한 善導轉業施策이 全無하였으며 特히 日帝末葉에는 太平洋戰爭遂行의 一環策으로 食糧增量을 為해 山林開墾을 大大的으로 許容勸獎하여 到處에서 山火發生과 沙汰地가 繢出하였다.

8.15解放後 火田으로 因한 山林 被害를 防止코자 하였으나, 實効性 있는 政策具現을 講究치 않고 法에 依한 團束만을 내세워 前近代의 人取締行政만을 固執하였다. 때문에 何等의 實効를 보지 못한채 人口增加에 따른 火田人口의 增大를 自招하여 山林被害는 激化되어 나갔다.

政府는 火田民에 對한 社會政策의 生活基盤造成策을 具現하여 火田耕作을 根絕시킬 施策을 確定하고 74年을 起點으로 하여 江原道는 火田整理示範道로 指定하고 段階의 으로 他道로 移行實施하여 77年에 全國의 으로 本事業을 完結키로 計劃을 設立하고 있으며 76년은 火田整理事業의 決定의 해로 되어 있어 忠北, 慶北의 一部 火田地를 除外하고는 全國의 으로 終了하게 되어 있다. 本事業의 核心道는 江原, 忠北, 慶北으로서 火田面積이 가장 많이 分布되고 있다.²⁾

江原道는 全道面積의 8割이 山林으로 占有하고 있어 火田面積이 他道에 比하여 가장 많은 分布로 全國總火

田面積 75千ha中 31%인 23千ha를 占하고 있다.³⁾ 火田은 山林荒廢을 促進시켜 莫大한 土砂流出의 惡起로 下流地域의 耕地埋沒과 國土의 浸蝕을 促求하여 旱水害의 根源을 이주위 國家經濟發展에 一大沮害要因이 되고 있다. 治山綠化의 成果는 火田冒耕의 根絕없이는 期約할 수 難을 通过 國家百年至大計를 為해서는 數百年來의 火田因習을 按本하여 國土의 綠化와 豐饒을 期함은 國家的 使命이라 하겠다.

江原道는 山林의 道로 自處하고 있어 道民의 活路를 山林에서 찾기 為하여 65年에 山地綜合開發 7個年計劃을樹立하고 火田整理事業을 最優先施策으로 定하여 事業을 實施하던中 68年의 三陟, 蔚珍共匪侵擾事件으로 脆弱地區獨家村整理事業이 國家安保의 見地에 事急을 要하게 되어 火田整理事業計劃은 中斷白紙화되고 69年부터 集中的인 行政力を 勵員하여 脆弱地區對策事業을 展開하여 72年에 終結하였다.

脆弱地區對策事業實施期間中 道內 到處에서 官憲의 團束이 미치지 못함을 奇貨로 火田冒耕이 盛行하여 火田人口가 急增하게 되자 道當局은 火田整理事業의 再開가 不可避하게 되어 73年에 道內一圓에 分布된 火田의 一齊調查를 實施하고 事業에 着手하였다. 道當局은 火田整理事業을 道政의 第一義務인 力點事業으로 定하고 73年을 準備年度로 하여 74~76年의 3個年間에 火田을 一掃한다는 方針을 確定하였다. 그리고 過去의 純火田民에 對한 代土開墾地集團移住施策의 失敗를 教訓삼아 移住定着金에 依한 他地方移住轉業으로 火田生活의 請算을 斷行케 하였다.

火田整理事業은 火田跡地에 對한 山林復舊化라는 對地的事業과 火田廢耕으로 因한 生計危脅對策이라는 對人的事業이 複合된 重且大한 事業으로서 官民의 協同과 火田民의 自發的인 呼應이 뒤 따라야 하며 事業推進過程에는 許多한 問題點과 隘路가 介在되어 있어 이에 對한 問題點分析과 그 對策을 披瀝하여 政為當局의 參考의 一助로 提供코자 한다.

II. 火田耕作의 史的背景

古來로 山林의 斜面이나 原野의 草地를 燒却하여 農耕地로 利用한 것은 原始農業段階에 있어서 世界共通의인 現象이었다.⁴⁾

日本에서는 德川幕府時代에 平地없는 山間地帶에서는 火入하여 燒烟(火田)을 만들어 耕作하였으며 이리한 燒烟은 明治中葉까지 山間僻地到處에서 農耕의 手段으로 盛行하였으나 오늘날은 交通手段의 發達과 營

農體制의 改革으로 그 性格이 變貌하여 集約的인 經營에 依한 高冷地農業地域으로 化하여 特殊作物栽培地로 利用되고 있다.⁵⁾

中國에서는 火耕이라 稱하여 火田農業이 滿洲 華北 華南 및 臺灣의 山間地域에서 廣闊한 面積을 燒却하여 無施肥로 雜穀類를 栽培하고 있었다 한다. 近間 臺灣省政府는 火田耕作을 嚴格히 規制하고 綠島運動을 展開하고 있어 火田은 減縮一路에 있다.⁶⁾

歐洲에서는 Urwechsel Wirtschaft라 하여 植林地와 耕地를 두고 輪作하는 方法으로 耕地가 地味消耗로 거의 廢耕에 이르게 되면 植林地를 伐採火入하여 耕作하고 廢耕地는 速成樹를 造林하여 두었다가 數年後 再耕地化한다. 우리나라 火田農業에 있어서 廢耕火田地는 休閑하였다가 다시 數年後 耕地化하는 것과는 그 性格이 다로다.

美國의 開拓初期에 盛行하였던 Burning Cultivation Field는 우리나라 火田農業과 性似하여 山林에 마구 放火하여 農耕地化하고 地味衰退하면 새로운 山林으로 移動耕作하여 나갔던 것이다.⁷⁾

우리나라에 있어서 火田耕作의 起源은 不明하나 豆滿江邊의 女眞族이 滿洲와 韓半島에 걸쳐 山中에서 外部世界와는 絶緣된 「중골」(僧村)이라는 在家僧村을 形成하고 火田農業을 한것이 始初라는 說이 있다.⁸⁾

文獻에 依하면 新羅時代의 白田이 火田에 該當하는 듯 하며 高麗以後의 田制에 不易田, 一易田, 再易田等의 區分이 있다. 不易田은 正田으로當時耕作하는 土地이며 一易田은 隔年耕作을 再易田은 三年間隔으로 耕作하는 土地로 되어 있어 再易田이 오늘의 火田에 該田하는 것으로 確定되며 火田民의 存在는 制度上에 認定되었음을 알수 있다.⁹⁾

李朝時代에는 黨爭에 침몰하여 政治的인 流刑 또는 國亂으로 因하여 深山幽谷으로 落鄉 또는 避亂하여 이를 後孫들이 隱居生活로 어느 程度의 火田의 耕作되었으며 一般庶民中에는 激甚한 課稅負擔과 賦役等 苛斂誅求에 生計가 漠然하게 되어 山中으로 逃避하여 火田耕作으로 代代로 生活을 營為하였기 때문에 松林을 禁養하여 오던 禁山, 封山, 宜松山, 松田等의 山林에 까지 波及되어 그 被害가 莫甚하여 朝廷에서는 歷代君主가 火田禁墾令을 發布하였으나 四色黨爭의 政治的昏迷로 그 實効를 거두지 못하였다.¹⁰⁾

英祖時代(1724~1776)에 이르러 政局이 安定되면서 禁伐禁火의 規定을 強化하여 新規開墾을 嚴禁하고 既耕作中인 火田을 最下位等級인 六等田으로 定하여 課稅對象地로 하고 定着케 하였다.¹¹⁾

火田이 急激히 盛行한 것은 最近의 일로서 約 80年前 清日戰爭으로 平安南北道가 交戰地로 되어 平野地帶의 住民은 앞을 다투어 山間奥地로 避亂하여 이들 避亂民들의 火田開墾을 契機로 火田耕作이, 盛行하게 되었으며 火田이 馬鈴薯適地임이 알려지자 入山者が 더욱 늘었으며 또한 日政時代에는 三南地方에 洪水와 旱害가甚하여 살 수 없게 되면 男負女戴하여 三水, 甲山 또는 江原道地方의 密林地帶로 移住하여 그들은 到處에서 山林에 마구 불을 질러 火田을 冒耕하게 되면서 山林의 荒廢는 加速化되어 오늘과 같은 慘狀을 招來하게 하였다. 이들은 火田을 冒耕할 뿐만 아니라 早春 山에 불을 놓아 山菜의 採取等으로 延命하면서 流浪하는 人間最下의 生活을 營爲하며 살았다.¹²⁾

1925年度 朝鮮總督府統計에 依하면 表1과 같이 火田 總面積 37萬ha에 火田人口 116萬名으로 集計되어 이數字는 날로 增加되어 山林의被害が 激甚하여 감으로 火田民에 對한 善導策을 講究하게 되었다. 即 火田의 因襲은 數百年의 傳來로 繼承되어 온 生業으로서 荒耕下山措置는 不可能함으로 营農改良에 依한 現地定着으로서 火田冒耕의 擴大를 禁하는 施策을 採擇하게 되어 1928年에 火田調査委員會를 設置하여 그 作業에 着手하였다.¹³⁾

表 1 1925年度 火田實態

區分	火田民		
	火田面積	世帯數	家族數
所有別			
計	369,963ha	230,585戶	1,159,026人
國有林	203,188	106,093	549,890
民有林	166,775	124,492	609,136

資料；橋本傳左衛門 火田調査報告 1928

日常의 政策的인 火田整理事業의 着手는 1922년에 北鮮開拓事業의 一環으로 實施하였다. 當時 成鏡南北道와 平安北道에 걸쳐 位置한 蔚馬高原은 216ha萬의 林相이 優良한 要存國有林을 包藏하고 있었으며 이는 全國要存國有林의 7割餘에 該當하는 原始林으로서 輓國山林의 核心體인 것이었다. 이와 같은 大山林地域내에 12萬ha의 火田과 27萬戶의 火田民이 居住하면서 無施肥掠奪營農으로 大密林을 放火燒却하고 그跡地를 冒耕하는 浮浪農民이 있음으로 當局은 1932年以後 15年計劃으로 豫算 2,683萬圓을 投入하여 火田整理와 火田民의 定着指導事業을 展開하면서 그 地域內의 山林開發事業을 促進하기 為한 山林鐵道道路等을 敷設하였다. 그리고 火田民에 對하여 現耕作地에서 营農方法을 改良하면

서 定着시키기 為한 山農指導機構을 設置하였다.¹⁴⁾

8.15解放後 政治的 空白期를 背景으로 火入火田을 慈行하였으며 6.25動亂收復後 北韓으로부터의 避亂民에 依한 急格한 人口增加는 더욱 火田開墾을 慈行하였다. 特히 4.19革命이 發生한 해에는 行政力의 失敗로 盜濫伐과 火田冒耕이 極에 達하였다. 5.16革命後 山林行政을 強化하여 火田冒耕을 防止하는데 努力하였으나 그 成果를 바라보지 못한채 火田耕作은 增加하여 나갔다.

오늘날의 火田은 過去와 같은 流動火田民에서 定着된 火田民으로 變遷해가며 漸次熟田化되어 가고 있다. 그 理由는 過去와 같이 肥沃한 林木地盤을 찾았더니 逆서 火田開墾을 할 수 있는 興件形成이 不可能함으로 一定地域에서 蠶喰形態로 火田地를 擴張하여 地力이 消耗된 火田地에는 金肥等을 施肥하면서 低位生產을 도면하려고 嘗み고 있는 것이 現實의 火田인 것이다.

III. 火田發生의 要因分析

火田이 타한은 火田整理에 關한 法律 第1條에 明示된 바와 같이 合法的節次에 依하지 않고 山林에 불을 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이를 開墾하여 農耕地로 使用하고 있는 土地 또는 地力衰退로 荒耕되어 있는 土地를 指稱하고 있다. 火田의 分布는 人蹟이 疎遠한 山間奥地에 集中되어 있는가 하면 村落附近等坊坊曲屈에 散在되어 있어 山林荒廢로 因한 國土保全의 危脅이 加重되어 李朝時代부터 火田을 禁하고 植林을 鼓獎하였으나 그 實効를 보지 못하였으며, 오늘날에는 國道 및 鐵道邊村落 및 都市近郊의 山林에까지 侵入하여 火田冒耕이敢行되고 있다. 이러한 火田의 發生이 當局의 關東에도 不拘하고 옛부터 根絕되지 않고 擴大되어가는 原因을 分析하면 大體로 다음과 같다.

- 1) 政治 混, 社會的不安으로 深山幽谷에 隱遁隱身하였다가 生計之策으로 火田을 하게 된 境遇.
- 2) 朝廷의 背馳한 課稅 稅役 賦役等 荷歟誅求子 遷徙入山하여 火田으로 生計를 維持하게 된 境遇.
- 3) 壬辰倭亂, 清日戰爭 露日戰爭等의 努를 遷徙하여 入山하였다가 火田을 하게 된 境遇.
- 4) 無主公山의 共用林制度下에서 火田에 對한 制度가 없을 뿐 아니라 課稅對象除外로 隱身하기가 容易하다는 點.
- 5) 平地에서 生活基盤을 잃은 者가 容易하게 火田에 依한 耕作地를 無償으로 일할 수 있다는 點.
- 6) 新規火田은 一般的으로 平地의 熟田보다 肥沃하여 無施肥로 营農이 可能하다는 點.
- 7) 火田의 地力이 衰退하면 隣接山林에서 剩王을 火

田을 冒耕하여 移住하기가 容易하다는 點

8) 官에서 賦課하는 各種稅金과 公課金이 거의 없다는 點.

9) 貧者は 平地集團生活에서의 劣等意識을 山中生活에서 拂拭할 수 있다는 點.

10) 一旦 入山하여 開墾하고 住宅을 마련한 火田民에 對한 強制撤去는 關係法律의 適用이 困難하다는 點.

11) 火田民의 生活이 原始生活을 免치 못하고 있어 犱舍의 食生活이 그다지 苦痛되지 않아 刑罰을 두려워하지 않는 點.

12) 隅東官憲自身이 火田民의 生活慘狀에 同情하여 強力한 立件化措置를 取하지 못하고 있다는 點

13) 火田耕作은 生計를 為한 糊口之策인 生活手段의 必要惡으로 看做하여 法의 刑罰을 耻辱視하지 않고 있다는 點.

以上 列舉한 몇가지 理由에서 보는 바와 같이 火田冒耕根絕策은 決코 法에 依한 強力한 團東안으로는 그 實效를 보지 못하고 있음이 立證되고 있음으로 반드시 國家社會保障에 依한 生活安定基盤의 助成策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江原道火田整理事業의 沿革

江原道는 山林面積이 全道面積의 8割을 占하고 있어 火田面積이 他道에 比하여 가장 많이 分布되고 있다. 道內 2萬餘ha의 火田은 山林荒廢를 加速화시키어 國土保全을 危脅하고 있으며 4萬餘戶에 達하는 火田民의 生活은 貧困과 無知에서 해여나지 못하고 있어 火田整理의 對策이 時急을 要하게 되어 있었다.

江原道의 火田整理事業에 對한 첫 試圖는 1924年～1932年間에 火田民 1,659 世帶를 代土 6,360ha를 開墾

하여 入住定着시키었으나 集團生活의 環境不適應과 土地의 地力衰退로 5～6年後 移住者の 8割이 離脫再入山하여 火田을 冒耕하게 되어 失敗로 끝났다.¹⁵⁾

2次로 江原道에서는 1965年 山地綜合開發 7個年計劃을 確定하고 火田整理事業을 다음과 같은 推進方針下에 事業을 進行하였다.

1) 傾斜 20度以上의 火田은 廢耕措置하여 山林으로 復舊한다.

2) 傾斜 20度以下로서 土深 및 土質이 農耕地로 適合한 火田은 階段式 開墾 또는 草生帶를 造成하여 永久農耕地로 誘導한다.

3) 整理火田民에 對하여 戶當 1～1.5ha의 代土와 住宅を 建築하여 集團移住로 定着시킨다.

4) 代土開墾地周邊에는 防風林을 造成하며 開墾地中間에는 草生帶를 造成하여 農作物을 風水害로 부터 保護せ한다.

5) 移住火田民에 對한 營農支援과 技術指導를 積極實施한다.

6) 要所要所에 火田防止監視哨所를 設置한다.

7) 火田整理는 Dam, 賽水池流域, 觀光地帶, 都市周邊 國道 및 鐵道沿邊, 其他 山林荒廢를 招來할 豐慮가 있는 곳을 優先實施한다.¹⁶⁾

火田整理事業의 諮問機關으로 65年 1月 江原道山地綜合開發委員會를 發足시켜 火田整理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여 道知事의 諮問에 應하게 하였다.¹⁶⁾

其便 龙大在 火田整理事業을 法的支援과 保障 없이 道自體의 行政力만으로는 遂行이 困難함으로 火田整理에 關한 特別法草案을 起草하여 山林廳의 推進으로 66年 4月 「火田整理에 關한 法律」이 制定公布됨에 따라 國家財政의 支援과 長期計劃의 果敢한 實行의 길을 터 놓았다.¹⁷⁾

表 2 火田整理事業實績 單位; 火田 ;ha 火田民; 戶 代土開墾; ha

區 分	實 態	火 田	火 田 民			代土開墾
			純火田民	併作火田民	計	
65 年 實 態		24,344	16,517	19,276	35,793	—
整理實績	火田整理事業(65～68)	7,154	6,702	—	6,702	8,439
	脆弱地區事業(69～72)	2,579	1,039	939	1,978	—
	計	9,733	7,741	939	8,680	8,439
未 整 理	國 道 邊 火 田	1,203	498	2,905	3,403	—
	其 他 地 域 火 田	13,408	8,278	15,432	23,710	—
	計	14,611	8,776	18,337	27,113	—

火田整理事業이 出帆한지 4년만인 68년에 三陟, 蔚珍의 山間地帶에 共匪侵透事件이 發生하여 이를 脆弱地區에 對한 對備策이 時急을 要하게 되었다. 江原道는 接敵地區로서 182km의 休戰線과 212km의 海岸線을 갖고 있어 太白山과 五台山等 險峻한 山岳地帶가 共匪侵透구역으로서 脆弱性을 内包하고 있다. 따라서 道는 山岳地帶에 散在해 있는 獨家村 2,800餘世帯를 移住集團化하여 共匪侵透에 對備하고 住民의 生命과 財產을 保護하기 為한 脆弱地區對策事業을 69년부터 對共政策의 次元에서 畏開하게 되어 山地綜合開發計劃과 火田整理事業은 白紙화되었으며 다만 獨家村整理區域內의 火田民이 整理되었을 뿐이었다. 脆弱地區獨家村整理事業은 72년까지 2,100世帯(이中 火田民世帯는 1,978戶임)을 移住定着시킴으로써 一段落되었다.¹⁸⁾

65년~72年間에 實施된 火田整理事業實績은 表2와 같으며 整理對象火田 24,344ha의 40%인 9,733ha가 山林復舊로 整理되었고 火田民世帯는 35,793戶中 24%인 8,680戶가 集團移住되었으며 代土開墾地 8,439ha는 6,702戶의 移住火田民에게 分配되었다.

69年부터 始作된 脆弱地區事業에 全行政力이 集中되어 官憲의 團束이 弱化되자 到處에서 火田冒耕이 再燃되어 道는 73年下半期부터 火田整理事業을 再開키로 하고 道內一圓에 걸쳐 火田에 對한 一齊調查를 實施한結果 表 3과 같이 火田 16,938ha에 火田民 39,141戶로 火田人口가 急激히 增加하여 國土保全과 治山綠化에 一大警鐘을 울리게 되어 73年을 準備年度로 하고 74年~76年の 3個年間에 完全整理를 目標로 하고 道政의 力點事業으로 強力히 推進키로 하였다.

表 3 火 田 實 態 現 況(1973.8)

a) 山林所有別火田面積

單位: ha

區 分	山 林 所 有 別					
	合 計	要存國有林	不要存國有林	道 有 林	公 有 林	私 有 林
總 火 田	16,938	5,240	365	394	2,338	8,601
山 林 復 舊	15,519	4,526	357	394	2,295	7,947
農 耕 地 化	1,419	714	8	—	43	654
國 道 邊	3,024	638	104	3	332	1,957
地 域 別	道·觀光地·都市邊	643	308	7	60	25
奧 地 帶	13,261	4,294	254	331	1,981	6,401
標 高 別	300m 未 滿	5,165	593	142	3	621
	300~500m	6,298	2,337	73	44	991
	500m 以 上	5,475	2,310	150	347	726
						1,942

b) 農作作者別火田面積

單位: ha

區 分	耕 作 者 別				整 理 區 分	
	計	純 火 田 民	併作火田民	山 林 復 舊	農 耕 地 化	
所有別						
計	16,938	3,395	12,943	15,519	1,419	
國 有 林	5,240	1,264	3,976	4,525	715	
民 有 林	11,698	2,731	8,967	10,994	704	

c) 山林所有別火田民戶數

區 分	耕 作 者 別		
	計	純 火 田 民	併作火田民
所有別			
計	39,141	5,696	33,445
國 有 林	9,608	1,457	8,151
民 有 林	29,533	4,239	25,294

斗) 火田民動態

實態	區分	單位	計	移住希望	轉業希望	現地定着希望
戶數	戶	戶	39,141	1,574	2,630	34,937
家族數	人	人	1226,927	8,354	14,887	203,686
年間戶當粗收益	農業所得	원	57,140	59,360	59,360	52,700
	農外所得	원	103,130	86,800	86,800	135,800
	平均	"	160,270	146,160	146,160	188,500

그리고 65년~68년間に代土開墾地로 集團移住한 6,702戶中 30%인 2,110戶가 集團生活에 對한 環境不適應과 土質착박으로 因한 作物栽培不良等의 原因으로 定着地에서 離脫하여 大部分이 再入山 火田民化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現象은 헤마다 늘고 있어 階段式代土開墾에 依한 集團移住施策은 失敗로 彙着되고 있다.

江原道는 火田整理事業專擔機構인 74年 1月 火田整理擔當官室을 新設하고 定員 13名을 所屬케 하였으며 各郡에는 山林課內에 火田整理係를 新設하고 定員 164名을 配置하였다. 그리고 市郡邑面單位로 火田整理推進委員會를 設置하고 火田整理에 關する 火田民移住問題, 現地定着火田民의 支援問題等을 効率的으로 處理토록 하고 있다.¹⁰⁾

表 4. 73 年 度 計 劃 對 實 績

事業名	細部事業	單位	計劃	實績	比率
火田整理	造林與砂防	ha	1,905	1,905	100%
	草地造成	ha	33	33	100
	計		1,938	1,938	100
公認地整理	草地造成	ha	100	100	100
	小河川工事	m	4,734	4,734	100
現地定着火田民對策	道路事業	m	570	570	100
	自助勤勞事業	m	10,500	10,500	100
	지 풍 改 良	戶	145	145	100

資料；江原道 火田整理擔當官室

註；公認地라한은 山林內에 介在한 耕作地로서 地目이 田畠으로 되어 있는 것을 称함。

且 就勞事業으로 小河川, 道路 및 自助勤勞事業等을 展開하여 4千萬원의 勞資을 撒布하였으며 가장 難題인 火田民移住問題은 國費에 依存하게 된으로 中央과의 完全妥結을 기다리 74~75兩年度에 完全整理키로 하였다.

73年上半期에 實施한 火田實態一齊調查에서 漏落된 火田이 繳出하게 되어 道當局은 火田整理의 有終이 美를 거두기 為하여 74年 上半期에 山林內에 介在한 全火田地를 個所別로 綿密히 地押調查를 한 結果 表5와 같이 整理對象火田 23,145ha 公認地 3,694ha, 火田家

V. 火田整理事業의 基本計劃

1) 火田整理事業

火田整理事業은 火田跡地에 對한 山林復舊化라는 對地의面과 火田廢耕으로 因한 火田民移住定着와 現地定着火田民의 支援對策에 關한 對人的面이 複合된 重且大 한 事業으로서 54億 3千萬원의 老大 한 豐算이 所要됨으로 73年을 準備年度로 하고 74~76年の 3個年에 걸쳐 道內 火田地를 完全整理키로 하였다.

準備年度인 73年에는 表4와 같이 火田地에 對한 造林 1,905ha, 草地造成 33ha와 公認地에 對한 草地造成 100ha를 計劃대로 完遂하였으며, 現地定着火田民에 對

表 5. 火田實態調査變動

區分	單位	調查年度		增
		73年 8月	74年 7月	
火田	ha	16,938	23,145	6,207
公認地	ha	2,040	3,694	1,654
總火田民	戶	39,141	45,642	6,501
移住轉對象	戶	4,204	5,658	1,454
現地定着對象	戶	34,937	39,984	5,047

資料；江原道 火田整理擔當官室

口 45,642戶로 增加되어 이를 基礎로 하여 最終的인 火田整理事業計劃을 表6과 같이 確定하고 이에 所要된 總投資額 54億 3千萬원에 對한 計劃을 表7과 같이樹立하여 本整理事業期間以後부터는 火田없는 平原 江原建設에拍車를 加하기로 하였다.

表 6. 火田整理事業計劃

가) 火田整理

單位 : ha

所有別	年度別整理面積			
	計	74까지	75	76
計	23,145	7,824	11,548	3,773
國有林	7,253	2,199	4,077	977
公有林	3,434	761	1,244	1,429
私有林	12,458	4,864	6,227	1,367

註 ; 74年度 計劃에는 73年度施行量 1,938 ha가 包含되어 있음.

나) 公認地整理

單位 : ha

年度別	計	74까지	75	76
面 積 :	3,694	846	1,940	908

註 ; 74年度 計劃에는 73年度施行量 100ha가 包含되어 있음.

다) 火田家口對策

單位 : 戶

區分	年 度 別		備 考	
	計	74	75	
計	5,658	2,903	2,755	現地定着對象家
移 住	5,315	2,678	2,637	口는 39,984 戶
移 轉	343	225	118	임.

資料 ; 江原道 火田整理事業擔當官室

表 7. 投資計劃

가) 事業別計劃

單位 : 千원

事業別	計	74까지	75	76
計	5,434,753	2,108,742	2,567,564	758,447
山林復舊	1,126,040	191,198	712,174	222,668
公認地山林化	360,251	83,751	229,284	47,216
移住·移轉	2,195,850	1,117,450	1,078,400	—
定着民支援	1,551,039	635,866	486,610	428,563
事後管理	201,573	80,477	61,096	60,000

註 ; 74年度 計劃에는 73年度投資額 159,028千원이 包含되어 있음.

나) 財源別計劃

單位 : 千원

財源別	計	74까지	75	76
計	5,434,753	2,108,742	2,567,564	758,447
國費	3,192,862	1,508,917	1,487,601	196,341
地方費	1,040,332	211,001	531,023	298,311
融資	775,566	330,100	220,659	221,816
自負擔	425,993	58,724	328,299	58,979

資料 ; 江原道 火田整理事業擔當官室

2) 火田整理事業基本方針

江原道의 第一義의인 力點事業인 火田整理事業을 國家百年之大計의 眼目에서 期必로 完遂하기 為하여 다음과 같은 基本目標와 方針을 세우고 官民의 鮮然一體의 姿勢로 推進키로 하였다.

가) 基本目標

모든 火田地는 國土保全의 機能상 最大生産의 所得化를 期하기 為하여 本然의 山林으로 復舊하며 火田民은 近代化된 生活環境에서 所得構造를 改善하여 自立된 生活基盤을 定立한다.

나) 基本方針

i) 火田地는 傾斜 20度의 等高線을 一定線으로 하여 그 上부은 山林으로 復舊하고 그 下部은 規模있게 整理하여 農耕地化한다. 그리고 一定線連續地대는 5~10m 폭의 벨트造林을 實施하여 燃料源造成와 防侵蝕을 防止하는 永久的인 境界로 한다.

ii) 公認地(20度以上の 山林내에 介在한 農耕地과 地目이 田 또는 畦으로 편여 있는 것)는 漢列地由 山林으로 變更시킨 뒤는 山林으로 復舊하고 未變更地는 潛獎事業으로 山林화를 積極推進한다.

iii) 火田民對策은 移住, 移轉, 現地定着와 区分하여 移住은 他邑 面洞으로 遠距離移住과 轉業로, 而서 移轉은 鄰近 中心마을로 下山定着시키며 現地定着은 自立地를 通じ으로 有成한다.

iv) 整理順序는 高速道邊, 國道邊, 懸光地域, 河流域부터 奧地로 進行하되 邑頭別豆順次의 完全復舊整理로 한다.²⁰⁾

VII. 火田整理事業의 推進方針

火田整理事業은 火田跡地의 對한 山林復舊事業과 火田農耕措置로 生計의 危脅이 取되고 火田民의 對한 生活基盤造成事業으로 大別되고 있다.

1) 火田地對策

i) 山林復舊

一定線(20度의 等高線) 以上의 山林내에 介在하고 있는 全火田이 整理對象이 되며 山林으로 復舊하기 為한造林은 一般造林과 벨트造林으로 區分 實施된다. 一般造林은 長期樹인 잣나무와 落葉松을 植栽하며 마을 周邊火田은 燃料源造成으로 아까시아를 植栽한다. 벨트造林은 一定線에 設置된 境界標柱에 連接하여 幅5~10m로 아까시아를 ha當 10,000本으로 密植하며 國道邊近距離分散火田에도 벨트式으로 造林하여 早期綠化로 因한 燃料源造成과 土砂流出 防止를 企圖한다. 그리고火田地隣近未立木地도 벨트造林을 하여 早期綠化를 期한다.

火田으로 荒廢된 沙汰憂慮地區에 對하여는 砂防管理所가 主管이 되어 砂防造林을 實施한다.

ii) 集團農耕地化

一定線以上의 山林내에 介在되어 있으나 當該團地가 20度以下의 緩斜地 또는 平原으로 되어 5ha以上連續된 集團地는 規模있게 整理하여 農耕地化하고 移轉火田民이 出入耕作토록 한다. 土砂流出防止로 中間에 草生帶를 設置하고 周圍에는 幅10m의 播植帶를 設置하여 火田의 擴大耕作을 防止하고 그 外廓에는 잣나무大苗로 防風林帶를 造成하여 樹壁化로 山林과 農耕地를 完全區割せ한다.

iii) 公認地山林化

傾斜度 20度以上의 山林내에 介在하여 있는 公認地는 地目이 丘, 峯, 垈地 其他 山林外로 公簿上에 登載되어 있기 때문에 法的으로 火田의 適用에서 除外되어 있으나 實地로는 火田과 同一한 性格인 것으로 整理對象이 되고 있다.

그러나 地目上으로 山林이 아니기 때문에 法的強制規定이 없어 事業推進上 또는 行政處理上 가장 痛的存在的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公認地가 小面積으로 山林內到處에 散在하고 있어 이를 奇貨로 山林을 鱼喰侵蝕擴大하는 要因이 되어 山林을 荒廢시키고 있었다.

公認地整理는 行政的特惠措置를 取하여 政府補助豆地目을 山林으로 變更하여 造林케 하고 地目變更未畢地에 對하여는 勸獎事業으로 傾斜, 土質等을勘察하여 造林, 桑田, 草地 等으로 造成케 한다.

iv) 大單位公認地整頓

公認地가 5ha以上連續되어 一定線以上의 山林내에 存在하면서 當該地가 傾斜 20度未滿인 緩斜地인 境遇는 集團農耕地化方法과 同一하게 整頓하여 農耕地화한다.²¹⁾

2) 火田民對策

火田整理後 生計維持가 困難한 火田民을 다음과 같

이 區分하여 支援策을 세우고 있다.

i) 火田地만을 耕作하고 全的으로 그所得에 依持하여 生計를 維持하는 純火田民

ii) 總生計費中 40%以下는 一般農耕地所得에 依持하고 60%以上을 火田地耕作所得에 依持하고 있는 併作火田民

iii) 農外所得等이 있는 者로서 總生計費의 60%以上을 火田地耕作所得에 依持하고 있는 者

以上의 火田民이 支援對象이 되고 있다.²²⁾

江原道는前述한바와 같이 65~68年間에 實施한 火田整理事業에서 純火田民對策으로 山林내에 代土開墾 8,439ha 住宅 6,702戶를 建立하여 集團移住定着케 하였으나 適地選定이 되지 못하고 急傾斜에 대 階段式開墾에 依한 土質의 침빠르기로 作物栽培가 不良한 위에 營農支援이 뒤따르지 못하여 30%以上의 家口가 離脫하여 再入山 火田民化하였으며 代土開墾地는 新로운 荒廢地로 變貌하여 山林으로의 還元이 不可避하여 失敗로歸着하였다.

火田民을 山林내에 定着시킴은 新로운 火田을 冒耕하여 山林을 荒廢시키는 要因이 됨으로 火田民을 山林에서 一齊히 下山移住시키어 他職業으로 轉換하여 火田耕作에서 永遠히 離脫하는 原則에서 火田民對策을 移住 移轉 現地定着으로 區分하여 이에 相應하는 支援對策을 樹立하게 되었다.

i) 移住火田民

對象은 一定線以上의 山林내에 居住하면서 火田整理로 全耕作地를 衰失하게 되는 者와 一定線以下地域에 居住하면서 火田整理로 農耕地로 認定된 土地 또는 自己所有土地가 600坪以下인 家口로서 生計가 零細하여 呂面으로 移住을 希望하는 者이다.

移住火田民에게는 定着基金으로 40萬원의 移住生計費를 支給하여 定着地에서 生活基盤을 造成케 한다.

ii) 移轉火田民

一定線以上의 山林내에 居住하면서 耕作하던 火田이 集團農耕地化計劃에 編入되어 隣近中心마을로 下山移轉하여 出入營農이 可能한 者 또는 其他耕作地(20度以下地域)의 零細的인 營農으로 生計維持에 支障이 있는 者이며 이들에게는 住宅建立資金으로 20萬원을 支給하여 새마을의 一員으로 自立할 수 있게 한다.

iii) 現地定着火田民

一定線以下의 地域내에 居住하면서 自己所有農地와 一部火田을 耕作하던 者로서 火田整理後 年間所得이 減少된 零細農家이며 이들에게는 共同養苗, 桑田造成, 韓牛融資等의所得事業과 地方公共事業이나 勞賃撤布事

業等에 優先 就勞判 하여 生計에 支障이 없도록 支援한을 原則으로 한다. 現地定着總 39,984戶中 年間所得 15萬원 以下가 24%, 15~25萬원이 36%, 25萬원以上이 40%로 異여 있으며 25萬원 以下의 零細火田民에 重點支援을 하고 25萬원 以上 農家는 自立農家로 育成시키며 特히 韓牛支援은 15萬원 以下인 火田民에게 優先配定한다.

VII. 火田整理事業의 推進實態

1) 74年度事業實績

74年度事業實績은 表8과 같이 火田地山林復舊 5,477 ha中 一般造林 5,461ha(國有林 2,106ha 公有林 525ha, 私有林 2,830ha)와 砂防造林 16ha를 實施하였고 集團農耕地化事業은 42個所에 409ha를 實施하였으나 3個所의 20ha는 傾斜急峻 및 土深淺簿으로 不適地로 判定되어 75年度에 山林化外 不可避하게 되어 豈算의 浪費를 招來하였다. 公認地山林化 746ha中 既判 地目이 山林으로 變更된 141ha는 造林하고 未變更地 605ha는 勸獎事業으로 山主의 頤에 따라 政府補助로 造林, 草地, 桑田等으로 造成하였다. 大單位公認地整頓事業은 5個所에 75ha를 耕地化하였다.

火田民對策事業으로는 移住 2,678戶(道內 1,544戶, 他市道 1,134戶)를 緣故地中心으로 實施하였으며 移轉 225戶는 中心마을로 下山移轉시키어 集團農耕地化를 予에 出入營農 또는 他職業에 從事하였다.

現地定着火田民支援으로는 共同養苗場 74個所에 74ha의 地를 政府補助로 購入設置하여 1,226戶를 就勞케 하였으며 韓牛融資入殖은 年間所得 15萬원 以下인 零細家口에게 優先的으로 3,980頭를 戶當 1頭씩 支援入睡하였다. 그리고 桑田은 411戶에 129ha를 支援造成하였다. 其他所得事業으로 藥草 養蜂 미작栽培等 12種의 事業을 1,755戶에 支援하였다.

零細火田民就勞事業으로 延 25萬名에게 230百萬원의 労賃을 撒布하고 370名을 固定職場에 就業을 韓旋하였다. 特히 火田地造林, 集團農耕地化事業 以及 定着火田民所得支援事業等 火田整理事業에 隨伴되는 各種就勞場에는 火田民單獨就勞를 原則으로 하여 自律的參與意識과 所得增大量 企圖하고 있으며 其他 一般零細民就勞事業에 亦 火田民에게 優先的으로 就勞의 機會를 賦與하고 있다.

74年度에 投入된 豈算은 表9와 같이 總 20億4千萬원中 國費 70.6%, 地方費 10.3%, 融資 16.2%, 自負擔 2.9%를 占하고 있으며 融資는 韓牛購入資金이며 自負擔

은 資材代 및 勞力費(植栽費)等이 包含되어 있다. 豈算이 不足한 市郡에서는 地方費負擔의 重疊을 받아 財政의 困境을 免치 못하고 있다.²⁰⁾

表 8. 74年度事業實績

事業名	細部事業	単位	事業量
火田地整理	山林復舊	ha	5,477
	造林	〃	5,461
	砂防	〃	16
	集團農耕地化	〃	409
	防風林	〃	58
	播植帶	〃	53
	草生帶	km	213
	公認地山林化	ha	746
	造林	〃	141
	獎勵事業	〃	605
	大單位公認地整頓	〃	75
	防風林	〃	14
	播植帶	〃	8
	草生帶	km	9
火田民對策	移住	戶	2,678
	移轉	〃	225
定着家口支援	共同養苗場	ha	74
	韓牛融資入殖	頭	3,980
	桑田造成	ha	129
	其他所得事業		藥草栽培外12種
	就勞事業	百萬원	230
	就業斡旋	人	370

資料；江原道 火田整理擔當官室

表 9. 74年度投資額 單位；千원

區分	計	國費	地方費	融資	自負擔
投資額	2,041,993	1,442,168	211,001	330,100	58,724
比率(%)	100	70.6	10.3	16.2	2.9

資料；江原道 火田整理擔當官室

2) 75年度火田整理事業

i) 施策方向

75年은 火田整理의 決定的推進의 해로 되어 있으며 74年度의 教訓을 살리어 다음과 같은 施策方向에서 推進키로 하였다.

가) 火田地對策

76年度 造林豫定地를 除外한 全火田地를 面別로 順次의 으로 完全 山林復舊化하여 速成樹 및 經濟樹種을 密植하여 早期綠化를 企圖하며 間作, 再闢耕을 強力

히 둘러하여被害의極小化를企圖한다. 그리고企業家 篤林家の自力造林을誘致하여火田地一掃에協力토록한다.

나) 火田民對策

移住, 移轉은造林開始前에 早期完了하여 生業에 定着豆목 指導를 強化하며 現地定着家口에 對한 所得支援事業을 擴大強化하고 火田民돕기運動의持续的展開를 汎道民運動으로 實施한다.

75年度事業計劃量은 表10과 같이 74年度에 比하여

増大하다. 山林復舊造林이 11,548ha로 前年度 5,477ha의 2.1倍이며 公認地山林화가 1,940ha로 前年度 746ha의 2.6倍에 達하고 있고 火田民의 移住, 移轉事業은 2,755戶를 完了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投入되는豫算이 25億6千7百萬원에 達하여 이中 國費 55%, 地方費 21%, 融資 9%, 自負擔 12%의 率로 되어 있다. 前年度에 比하여 國費負擔率이 減少되면서 地方費與 自負擔率이 大幅 增大되어 事業推進의 困難性을 隨伴하고 있다.²⁰⁾

表 10.

75 年 度 事 業 計 劃

單位: 千원

事 業 別	單 位	事 業 量	投 資 額	財 源 別			
				國 費	地 方 費	融 費	自 負 擔
合 計			2,567,564	1,487,604	531,020	220,650	328,290
山 林 復 舊 造 林	ha	11,548	709,044	344,326	274,120	—	90,598
集 地 農 耕 地 化	"	52	3,130	—	2,739	—	391
防 風 林 補 植	"	19	1,197	—	1,133	—	64
播 植 帶 補 植	"	8	296	—	265	—	31
播 種 帶 補 植	"	25	1,637	—	1,341	—	296
公 認 地 山 林 化	"	1,940	196,548	—	100,379	—	96,178
造 林	"	1,619	91,784	—	45,473	—	46,311
桑 田	"	178	84,236	—	34,400	—	49,836
草 地	"	105	14,551	—	14,520	—	31
其 他	"	38	5,977	—	5,977	—	—
大 単 位 公 認 地 整 頓	"	684	32,736	—	26,018	—	6,718
山 林 復 舊	"	308	19,352	—	16,622	—	2,730
農 耕 地 化	"	376	13,384	—	9,396	—	3,988
移 住 采 移 轉	戶	2,755	1,078,400	1,078,400	—	—	—
移 住	"	2,637	1,054,800	1,054,800	—	—	—
移 轉	"	118	23,600	23,600	—	—	—
定着家口所得支援事業		—	486,610	64,878	66,677	220,650	134,465
韓 牛 入 殖	頭	2,741	220,650	—	—	220,650	—
桑 田 造 成	ha	90	24,962	2,371	2,448	—	20,143
共 同 養 苗 場	"	73	78,301	—	4,445	—	73,856
其他所得事業	種	15	100,190	—	59,784	—	40,466
就 勞 事 業	—	—	62,507	62,507	—	—	—
事 後 管 理	—	—	61,096	—	61,096	—	—

資料: 江原道 火田擔當官室

나) 山林새마을運動의展開

「火田없는 푸른마을」建設運動을 部落單位로 展開하여 山村所得閭造成과 山村環境改善事業(새마을 가꾸기運動)을 推進하여 自主, 自立, 協同精神을 鼓吹하고 道內各機關與企業體와 定着火田民部落과의 姉妹結緣을 締結하여 不遇이웃돕기運動으로 昇華한다.

ii) 推進方針

가) 火田整理事業推進體系確立

本事業은 江原道政의 第1義의인 力點事業임으로 道傘下全公務員은 火田整理事業是第1義의인 責任으로 하여 本然의 業務를 第2義의으로 하여 推進한다. 그리고 火田整理事業을 그內容과 性質에 따라 細部事業으로 分類하여 市郡事業主管室, 課, 所長으로 하여금 分業의으로 擔當하고 責任推進토록 한다.²¹⁾

나) 「火田없는 푸른마을」運動의展開

a) 대응單位造林事業隊를 編成하여 都給造林으로 自

律的인 山林復舊을 하고 造林地은 分收契約締結과 火田民의 所得化를 期한다.

b) 火田地은 對象으로 公務員 및 社會團體의 福祉造林을 擴大한다.

c) 山主에게는 苗木을 支援하여 自力復舊造林을 義務화한다.

d) 木材開聯企業家(伐採業者, 造林家, 木材消費業者等)에게는 火田을 買入 또는 賃貸斡旋하여 火田地造林을 養成한다.

e) 鐵山主에게는 鐵山村周邊火田復舊을 義務화한다.

i) 產作戰地域內 火田地에 對하여는 駐屯軍部隊에 苗木을 支援하여 軍部造林으로 한다.

g) 山林契地域內 火田은 契外 復舊를 義務화하여 契林으로 造成해 한다.

h) 山林內 公認地는 山林化를 勸獎하기 為한 奨勵金을 支給하여 造林 草地 桑田等으로 造成해 한다.

i) 山村社團運動으로 隨保相助運動을 展開한다.

j) 火田民自立基盤造成

a) 移住, 移轉家口選定은 里洞, 邑面 市郡火田整理推進委員會의 3段階審查를 通하여 嚴正을 期하며 特히 最終審查인 市都委員會에서는 市郡, 邑面, 警察의 合同現地調查復命을 基礎로 한다.

b) 移住火田民에 對한 徹底한 追從管理及 就業斡旋等을 하여 生計安着을 指導한다.

c) 現地定着火田民에 對하여는 마을別 特性所得事業의 發掘과 農特事業等 營農支援을 하여 所得向上을 期한다.

라) 事後責任管理體系確立

火田整理後에 있어서의 再冒耕 또는 新規開墾을 事前에 防止하여 一定線以上의 山林내로 潛入 再入住하는 事例가 發生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管理體系로 한다

a) 連繫責任管理

再冒耕, 新規開墾防止에 對한 對地責任은 不要在國有林 및 公私有林으로 要存國有林으로 區分하여 前者는 市長, 郡守, 邑面長이 擔當하고 後者は 營林署長, 管理所長이 擔當한다. 그리고 山林內 再入住防止에 對한 對人責任은 管轄警察署長, 支派出所長이 擔當한다.

b) 循期別 現地點檢團束

春播期間作期 秋播期別로 隨時 波狀의 現地點檢을 하여 事前에 摘發團束을 한다.

c) 公認地整理指導管理

公認地山林化는 市長, 郡守, 邑面長의 責任下에 實施하여 地主의 自發的인 參與意識을 鼓吹시킨다.²⁰⁾

iii) 事業推進實態

火田整理事業은 火田跡地山林復舊化인 對地事業과 火田民自立基盤造成인 對人事業으로 區分實施되고 있다. 火田廢耕措置로 火田民의 生計對策이 擙頭되어 이들兩者는 不可分의 關係에서 同時に 事業이 推進되고 있다

가) 對地事業

對地事業은 山林復舊事業, 集團農耕地化事業 公認地山林化事業 大單位公認地整理事業으로 區分實施하고 있다.

a) 山林復舊事業

總火田地 23,145ha中 75년까지 整理된 面积 表11과 같이 84%에 該當하는 19,515ha(山林復舊 19,106ha, 集團農耕地化 409ha)를 計劃대로 完遂하였으며 積量16%의 面積은 76년에 完全整理하게 되어 있다.

75年度는 11,691ha에 38,086千本(長期樹 68% 速成樹有實樹 31%, 有實樹 1%)을 植栽하여 90%의 活着率을 보이고 있다.

表 11. 主體別山林復舊造林實績

單位 : ha

所有別	主體別	計	74년까지	75年
國有林	營林署	6,210	2,106	4,104
公有林		1,975	915	1,060
自力造林	道・市・郡	1,689	815	874
福祉造林	公務員福祉組合	286	100	186
私有林		10,921	4,394	6,527
自力造林	山主	879	445	434
補助造林	山林契	10,042	3,949	6,093
計		19,106	7,415	11,691

資料 : 江原道 火田整理擔當官室

註 ; 74年에 實施한 集團農耕地化 409ha는 包含되지 않음.

國有林과 公有林內에 介在된 火田跡地에 對한 山林復舊化造林은 所管官署에서 實施하고 있어 別問題가 없으나 私有林內의 火田은 山主의 自力造林으로 되어있으나 山主의 零細性으로 그 實現을 보지 못하고 補助造林으로 部落山林契에서 代執行하고 있다. 75년까지 私有林內火田에 對한 山林復舊 總 10,921ha中 山主自力造林은 不過 8%인 879ha이며 殘餘 92%인 10,042ha은 補助造林에 依하여 山林契 代執行하고 있어 山主의 自發的인 參與度가 極히 不振하다. 이는 山主의 財力의 零細性과 無關心에 基因하고 있는 것이다.

國・公・私有林內의 모든 火田地造林은 山林契에 由 火田民家口만으로 編成한 造林事業隊을 主軸으로 實施하여 自律的인 火田整理參與意識을 鼓吹시키는 同時に 勞賃所得을 企圖하고 있다. 그리고 自律的인 事後保護管理를 為하여 國有林造林地에 對하는 山元山林

契에 連帶保護命令을 發付하고 私有林補助造林地에 對하여는 參與山林契와 山主間에 分收契約을 締結하여 撫育保護의 義務를 賦課하며 自力造林地는 山主 또는 管理人에게 責任管理を 執하고 있다. 한便 自然部落單位로 責任區域을 設定하여 全部落民이 連帶保護共同責任을 지고 住民 스스로가 山林이 끝 所得源임을 認識하여 再冒耕을 根絕토록 積極啓導하고 있다.

現私有林內의 火田造林地는 9割以上이 分收契約地로서 山林契에서 管理하고 있으나 現山林契의 組織機能으로서는 形式化된 憂慮性이 濃厚한 實情에 있다.

官에서는 再冒耕防止와 事後管理의 徹底를 期하기 為하여 春播期(4月) 發芽期(4~5月) 間作期(6~9月) 秋播期(10~11月) 別로 年中 波狀으로 區域擔當 公務員이 巡山團束에 任하고 있다. 巡山區域이 邑面所在地에서 遠距離에 有기 때문에 機動性 있는 裝備의 具備가 時急한 實情이다.

b) 集團農耕地化事業

集團地한 一定線以上의 火田地中 傾斜가 緩慢한 20度未滿의 火田地로서 5ha以上 連續된 土을 稱하며 境界樹壁으로 防風林, 播植帶, 草生帶等을 設置하여 不當한 耕地擴張과 土砂流出을 防止하고 内部耕作地를 保護하고 있다. 그리고 一定線下部의 中心마을에서 出入營農을 하게 하고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74年度에 42個所에 409ha를 集團農耕地化하였으나 3個所의 20ha는 傾斜度 및 土深關係로 不適格地로 判定되어 75년에 山林化하였다.

現實의 으로 一定線以上의 山林地帶內에 耕作地로서 熟田化시킬 條件이 具備된 集團地는 거의 없음으로 75年度以後부터는 本事業의 計劃을 取消하고 昨年度에 設定한 集團農耕地中 補完을 要하는 52ha에 對하여 防風林 播植帶 草生帶等을 補修하였다. 既設定된 集團農耕地는 將次 草地 또는 桑田, 果樹園等 木本類의 作物栽培로 營農構造를 改善하면서 山林化事業을 併行하여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c) 公認地造林化事業

公認地한 火田整理事業上 便宜의 으로 使用하는 語句로서 一定線以上의 山林內에 介在한 耕地로서 公簿上地目이 田, 奄, 垈地, 其他 山林外로 登載된 것과 既政策地區로 實施한 脆弱地區對策事業入住地, 難民定着事業入住地 火田民代土開墾地等으로서 一定線以上의 山林內에 所在하고 있는 耕地를 稱한다. 前者를 一般公認地 後者를 政策地區公認地로 假區分하고 있다.

一般公認地는 法的拘束力이 없기 때문에 行政的으로 山主의 同意를 얻어 整理하고 있어 障壁으로 되어 있

다. 現實의 으로 一定線以上의 山林內에 介在하면서 火田과 同一한 位置와 性格을 띠고 있으나 단지 地目이 山林以外로 되어 있어 所有權侵犯問題擡頭로 法的規制에서 벗어나고 있다. 一般公認地는 山主를 說得하여 地目을 山林으로 變更시켜 (地目變更費補助) 造林化(資材代一切補助) 하며, 土質에 따라 桑田造成(ha當 20만 원 補助), 草地造成(ha當 12만 원 補助)을 勸獎하여 牛入殖을企圖하는 等의 特惠措置를 取하고 있다. 그러나 山主들의 耕地保全에 對한 我執으로 韶誘說得에 隘路가 甚한 實情이다. 公認地 總 3,694ha中 75年까지 76%에 該當하는 2,786ha를 計劃대로 整理하였고 殘量 24%의 面積은 76年에 마무리겠지 된다.

大單位公認地整頓은 74年에 75ha를 農耕地로 整頓하였고 75年에는 684ha(山林復舊 308ha, 農耕地化 376ha)를 整理하였으며 이는 65~68年間에 實施한 集團移住代土開墾地로서 傾斜 및 土深條件이 不適한 土은 山林復舊化하고 耕作可能地는 防風林, 播植帶, 草生帶를 設置하여 農耕地화하였다.

集團移住代土開墾은 總 6,702戶에 8,439ha이나 이中 30%以上이 營農不適生計困難等으로 離脫되어 있음으로 이에 對한 再整備가 擙頭되고 있다. 現在 一般公認地 및 代土開墾地整理로 移住가 不可避한 家口 756戶가 山林內에 殘留하고 있어 再冒耕의 要因을 안고 있다.²⁵⁾

i) 火田民自立基盤造成事業

火田民支援對策으로는 移住 및 移轉火田民과 現地定着火田民으로 區分實施하고 있다.

a) 移住 및 移轉火田民對策

移住 및 移轉對象家口 5,658戶(移住 5,315戶, 移轉 343戶)는 74~75兩年間에 그 實施를 完了하였다.

移住은 火田耕作을 完全히 清算하고 他處의 緣故地로 移住하여 職業轉換으로 生活環境을 바꾸어 定着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定着基金으로 戶當 40萬 원이 補助되어 自立基盤을 造成토록 하고 있다.

移住火田民實態은 表12와 같이 道內移住 61% 他市道移住 39%이며 地域別로는 都市 43% 農村 57%로 都市移住者는 公共機關, 企業體等에 就業 또는 商工業, 勞動等에 從事하고 있으며 農村移住者는 農土를 購入 또는 貨貸借하여 農業에 從事하고 있다. 所得水準은 自立家口 30%, 年間所得 25萬 원 未滿으로 要支援家口 67% 極貧家口 3%로 되어 있다.²⁵⁾

移住火田民의 自立基盤造成의 成敗는 火田再發生을 防止하게 되며 이들이 平地社會에서 落伍者が 되는 境遇에는 深山幽谷으로 再入山하여 火田生活로 復歸하게 된 것므로 官民이 合心하여 自立基盤造成에 協力하

表 12. 移住火田民實態

單位：戶

區分 年度別	計	道別		地域別		住宅確保		職業別		所得水準			
		道内	他道	都市	農村	自家	借家	農業	商工業	勞動	自立	支援	極貧
74	2,678 (100)	1,544 (58)	1,134 (42)	1,227 (46)	1,451 (54)	971 (36)	1,707 (64)	1,095 (41)	396 (15)	1,187 (44)	845 (32)	1,759 (65)	74 (3)
75	2,637 (100)	1,689 (64)	948 (36)	1,045 (40)	1,592 (60)	1,129 (43)	1,508 (57)	1,410 (53)	205 (7)	1,022 (40)	743 (28)	1,811 (69)	83 (3)
計	5,315 (100)	3,233 (61)	2,082 (39)	2,272 (43)	3,043 (57)	2,100 (40)	3,215 (60)	2,504 (47)	601 (11)	2,210 (42)	1,588 (30)	3,570 (67)	157 (3)

資料：江原道火田整理擔當官室

註：() 内 数字는 百分率

고 있다. 특히 公共機關, 民間企業體의 幹部級斗 民間有志級들이 個別의 으로 轉入한 火田民家口와 姉妹結緣을 締結하여 多大한 成果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根源의 으로는 火田民自身의 自助 自立精神의 啓發이 絶對必要한 것이다.

移轉은 一定線以上의 山林內居住地에서 隣近中心마을로 下山移轉하여 集團農耕地化된 곳에 出入營農 또는 他業에 從事하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住宅建立資金으로 戶當20萬원이 補助되고 있다. 住宅確保는 마을에서 斡旋하고 住宅建築은 市郡主管으로 施工하는 方針下에 單獨住宅의 建坪8~12坪으로 建立하여 入住시켰다.

b) 現地定着火田民對策

이들은 併作火田民으로서 平地의 農耕地와 一部火田을 耕作하고 있던 者들이며 火田整理로 耕作地가 減縮되어 生計危脅을 受고 있는 者들이 支援對象이 되고 있다.

總火田家口數 45,642戶中 移住 5,315戶(12%) 移轉 343戶(1%), 現地定着 39,984戶(87%)로 되어 있다.

現地定着家口中 年間所得 25萬원以上家口 40%, 15~25萬원家口 36%, 15萬원以下家口 24%로 되어 있어 年間所得 25萬원以上 農家는 自立農家로 育成하며 15~25萬원 農家는 生計不足分을 各種支援事業으로 補充하며 15萬원未滿 農家에 對하여는 特別支援策을 마련하여 韓牛入殖을 비롯하여 各種支援事業에 優先의 으로 參與시키고 있다.

定着民支援事業은 그地域으로 移住轉入한 火田民을 包含하여 實施하고 있으며 그 支援事業豫算은 前記 表7과 같이 火田整理期間인 76년까지 總 1,551百萬원의豫算을 投入하고 韩牛入殖을 비롯하여 桑田造成, 共同養苗場設置, 各種所得事業 및 就勞事業을 展開하여 融資, 補助 및 勞賃散布等으로 支援하고 있다.

營農支援策으로 作付體系改善指導와 高所得作物栽培를 建奐하기 為한 营農資金優先融資와 营農資材遞期供

給으로 支援하고 있다.

韓牛入殖은 戶當 1頭原則으로 全額融資制로 零細한 家口는 優先의 으로 配定하고 있으며 이는 無擔保信用貸付로 되어 있다.

桑田造成支援에 있어 74年度는 桑苗代 全額補助되었던 것이 75年度는 桑苗代 ha當 26萬원中 80%인 21萬원이 自負擔으로 되어 零細한 農家の 過重화 負擔으로 되어 있다.

共同養苗場運營도 地購入費만 補助하고 資材代 및 事業費의 90%(ha當 100萬원)가 自負擔으로 되어 있어 資金難이 隨件되고 있다.

各種所得事業으로는 地域의 特殊與件에 適合한 事業으로 「비닐하우스」에 依한 高等蔬菜栽培를 비롯하여 葉菜, 豆고, 養蜂, 養兔, 養豚, 養雞, 藥工品, 木刻工藝品製作等 15種에 達하는 多樣한 事業을 展開하고 있으나 事業費中 補助 6割 自負擔 4割의 比率로 되어 있다.

勞賃所得인 就勞事業으로 小河川整備, 道路改修, 自助勤勞事業을 實施하고 74年に 230百萬원, 75年に 295百萬원의 勞賃을 散布하여 年間 戶當平均 17千원의 所得이 配當되었다.

VIII. 火田整理事業에 따른 問題點分析

火田冒耕의 因習은 治山綠化面에서 또는 國土保全面에서 期必코 根絕되어야 하며 火田의 存在는 貧困斗 無知의 所產으로 後進國의 象徵으로 國家發展斗 國民經濟向上을 為해 火田整理事業은 반드시 成就하여야 하며 本事業推進過程에 따른 問題點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1) 火田地는 地勢外 險峻하고 廣大한 山岳地帶에 分散하고 있어 監視團束이 困難하다.

2) 火田民은 生活의 極貧斗 教育水準이 낮아 自助自立精神이 薄弱하여 懶惰性向이 強하다.

3) 火田耕作以外의 特殊한 技術이나 知識이 거의 없

가 때를에 火田耕作을 天職으로 삼고 있다.

4) 山間地帶에서의 自由放任의 인 生活習性은 平地에서의 複雜하고 規制가 많은 集團生活을 敬遠하고 있다.

5) 貧困과 營農技術의 落後로 集約的인 平地農業으로 轉換할 基盤이 薄弱하다.

6) 現下 失業者就勞問題는 社會的問題로 擡頭되고 있어 火田民의 勞動力を 雇傭吸收할 수 있는 社會的與件이 形成되지 못하고 있다.

7) 耕作火田의 完全整理로 他地域으로 移住한 火田民에 對한 轉業定着問題는 最大關心事로 浮上되고 있다. 即 都市移住者에 對한 就業斡旋과 農村移住者에 對한 住宅 및 耕地確保支援問題가 難題로 되어 있다.

8) 一定線以上の 山林내에 介在한 公認地整理는 法的 規制力이 弱어 說得에 依한 事業推進에 隘路가 甚大하여 往往 公認地山林化에 不應하는 事例가 있다.

9) 公認地耕作家口는 當初 火田家口와 分離調查되어 있어 公認地整理로 因한 移住費國庫豫算이 策定되어 있지 않아 移住가 留保되고 있다. 이 留保되고 있는 家口가 756戶에 達하며 이 外에 山林內獨立家口가 398戶나 殘留하고 있음을 重視하지 않을 수 없다.

10) 現地定着火田民中 生計維持가 困難한 零細家口에 對한 就勞支援이豫算關係로 制約되고 있다.

11) 韓牛生殖에 따른 共同飼育用 飼料作物圃의 確保와 시세이生食, 家畜衛生管理體系等이樹立되어 있지 않아 그 成果가 不振하다.

12) 桑田 및 共同養苗場造成과 其他所得事業의 自資擔率이 높아 資金難에 遭着하고 있다.

13) 移住火田民의 公·私債整理問題에 對한 行政的處理方針이樹立되어 있지 않아 特히 私債關係는 支給된 移住定着金中에서 當事者間에 清算하고 있어 生活基盤造成에 支障을 招來하고 있다.

14) 苗木供給이 圓滑치 못하여 火田跡地造林에 對한 適地適樹가 規行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再冒耕防止를 為한 事後管理가 業務量繁複 및 裝備不足으로 不徹底하다.

15) 樹栽樹種中 아까시아, 쭈비싸리의 量이 많아 山主들의 造林忌避性을 誘發하고 있다.

16) 同一地域내에 있어서 市郡管轄下에 있는 民有林과 營林署管轄下에 있는 國有林이 相互隣接되어 있을 때 整理年度가 相異되어 邑面別順次完全整理의 調整이 되지 못하고 있어不合理性을 露呈하고 있다.

17) 漏落火田地가 散發의으로 露出되고 있으나 區域擔當公務員은 功名心이 作用하여 이를 은폐하는 傾向이 있다.

18) 火田造林地에 對한 再冒耕과 新規冒耕火田地를 摑發하여도 譴責懲戒가 두려워 強力한 立件化處理를 하지 못하고 弑縫의으로 處理하는 傾向이 있다.

以上과 같이 數百年來로 火田耕作의 因習을 拔本整理하여 本然의 山林으로 復舊하는 同時に 生計危機에 面한 火田民의 生括基盤을 造成하는데 許多한 問題點과 隘路가 介在되어 있다.

IX. 對策

江原道內의 廣大한 山林의 一圓에 걸쳐 數百年來로 耕作하여 오던 世襲의 火田을 短期間內에 拔本整理함에 있어 限定期限行政力과豫算만으로는 所期의 成果를 期할 수 없으며 2百萬道民의 總和로써 推進하여야 한다.

本事業推進에 隨伴되는 問題點의 解決對策을 다음과 같이 披瀝보자 한다.

1) 一般的으로 火田民이라 하면 人間의 落伍者로서 山間僻地에 隱身하여 火田耕作으로 延命하고 있는 落後된 者로認識하고 賤待視하여 敬遠하는 傾向이 많다. 江原道民은 이 時한 先入感을 拂拭하고 火田整理로 下山移住하는 火田民을 同胞愛로서 뜻이하여 物心兩面의 聲援으로 集團의 火田耕作으로 早速히 同化할 수 있는 雰圍氣를 造成하여 주는 것이 先決問題이다.

2) 移住火田民에 對한 就業保障으로 自立基盤을 構築토록 公共機關이나 企業體에서는 優先의으로 이들을 受容就業할 것이며 한便各機關, 團體, 業體等의 幹部級과 民間有志級人士는 火田民家口와 個別의 姉妹結緣을 맺어 이들의 就業活動을 積極支援하여야 할 것이다.

3) 官民合同으로 本事業을 推進할 수 있는 組織體를 構成하여 火田民의 就勞斡旋과 厚生의 支援方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本事業은 火田民의 生活을 左右하는 重要之事으로 有力한 民間企業體들이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이러한 機構의 核心構成원이 되어 就勞其他厚生의 問題를 다퉗게 되면 効率的으로 推進될 것이다.

4) 本道는 民統線에 隣接하고 있음으로 移住火田民에게 民統線北方의 遊休地를 開墾耕作토록 積極斡旋할 것이다. 火田民은 複雜하고 規制가 많은 社會生活에서의 競爭力에 對한 適應性이 薄弱함으로 이와 같은 一般農業으로 轉換시키는 것이 適性에 맞는 것이라 하겠다.

5) 火田冒耕防止는 官의 行政力만으로는 不可能함으

로 山村새마을運動의 一環으로 區域內 山林保護의 連帶責任을 치울 수 있는 制度가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制度의으로는 里洞單位의 山林契가 組織되어 있어 區域內의 山林에 對한 盜濫伐防止, 山火警防, 火田冒耕防止等 山林保護를 自律的으로 行하게 되어 있으나 그 組織과 機能이 微微하여 放任狀態에 있는 實情임으로 이는 山村새마을運動에 直結시켜 新規의 火田冒耕을 事前에 防止도록 할 것이다.

6) 私有林內의 火田造林은 大半이 分收契約에 依한 山林契造林으로 되어 있어 山林契員의 覺醒下에 保護撫育管理의 延長을 期하여 契의 基本財產造成과 所得增大를企圖할수 있도록 契의 組織과 機能을 強化할 것이다.

7) 過多한 各種 補助金의 支援은 依他心을 助長하게 됨으로 自立하는게 必要한 最小限의 支援에 局限하여 實施하여야 한다. 火田民은 自助 自立精神이 薄弱함으로勤勞精神培養과 勞資獲得을 為한 自助勤勞事業을 山村새마을事業과 連結시켜 이에 積極就勞하여 生計費 및 營農資金을 마련도록 할 것이다.

8) 各種所得事業展開에 있어 自負擔率이 높아 資金難에 逢着하고 있는 위에 擔保能力不足으로 融資支援이 至難한 實情임으로 制度의으로 全額後置擔保制를適用하는方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9) 共同養苗圃場施業에 따른 資材 및事業費의 90% 그리고 桑田造成에 따른 桑苗代의 80%가 火田民의 過重한 自負擔으로 되어 있어 事業推進이 不振함으로 適正線까지 補助率을 높여야 할 것이다.

10) 移住火田民에 對한 公·私債의 處理問題가 行政의으로 確定되어 있지 않아 公債인 農協 및 市郡負債가 戶當平均 5만원線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前居住地落民의 連帶保證責任으로 되어 있다. 整理方法으로는 部移住地管轄農協 및 市郡으로 債權을 移讓하여 自立後段階의으로 整理하는 方案을 講究하여야 하며 私債도 이에 準하여야 할 것이다.

11) 計劃에서 漏落된 火田地는 은폐하지 말고 追加計劃으로 陽性화하여 完全整理토록 할 것이다.

12) 公認地山林復舊化不應地에 對해서는 買上에 依하여 造林化하는 方案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13) 一定한 面積으로 集團化된 火田地造林에는 民間企業體를 誘致하여 造林意慾을 鼓吹시키는 方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4) 管理對象火田地域이 邑·面에서 遠距離에 있어 機動性管理가 缺如되어 있음으로 區域擔當職員에게 1人1臺식의 巡察用車이 카가 配定되어야 할 것이다.

15) 山林內獨立家口 398戶와 公認地整理區域內家口 756戶가 移住費豫算策定이 되어있지 않아 山林內에 殘留세 품은 火田冒耕의 原因이 됨으로 이들에 對한 移住費도 一般火田家口와 同一하게 國庫負擔으로 策定하여 76年에 完全整理토록 할 것이다.

火田整理事業의 成敗의 要諦는 火田家口에 對한 再入山防止와 再冒耕의 強力한 閉束實施와 持續的인 事後管理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火田整理豆 減少된 耕地面積의 収入補完으로 營農技術의 改良과 土地利用의 改善과 아울러 地域特性에 適合한 各種 所得事業展開로 自立基盤造成이 成就되어야 한다.

X. 結 言

火田整理事業은 國土保全과 治山綠化的 大命題下에 國家百年의 宿願事業으로 龐大한 豊算과 行政力を 投入하여 道政의 第一義의인 力點事業으로 推進하는 것 이므로 本事業의 成敗는 江原道의 活路開拓을 左右하게 됨으로 期必코 成功裡에 完遂하여야 한다. 本事業은 火田整理에 따른 山林復舊化란 對地의인 事業과 生計困難에 面한 火田民의 生活基盤造成이란 對人的인 事業이 複合된 重且大한 事業으로서 限定된 官의 行政力만으로는 力不足이 됨으로 2百萬全道民의 總和維新體制의 構築으로 一貫性있게 推進하여야 한다. 特히 山村새마을運動을 積極展開하여 火田民自身이 火田整理에 參與하며 勤勉自助協同의 精神으로 自立基盤造成에 邁進하여야 한다. 行政當局은 計劃된 豊算執行과 各種所得事業의 適期施行으로 蹤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現時點에 있어 本事業은 合法性과 合目的性과 一貫性 있는 物理的인 行政力의 三位一體로서 計劃된 事業을 推進하고 있으나 山林復舊는 長時日을 要하며 火田冒耕의 習性은 一朝一夕에 拂拭되는 것이 아니고 潛在되어 있음으로 期必코 持續的인 事後管理가 뒤따라야 한다. 本事業은 行政의으로는 76年에 終了되나 火田跡地의 山林復舊화의 成果는 10餘年 後에야 成林으로 地表를 被覆하여 綠化하기 始作하며 火田民의 自立基盤造成도 數年이 所要됨으로 持續的인 道民의 協助로서 有終의 美를 擧揚토록 하여야 한다.

謝 辭

本研究가 遂行될 수 있도록 研究費를 支援해준 產學協同財團에 對하여 衷心으로 感謝드리며 本研究에 必要한 各種 統計資料를 割愛해 주는 同時に 事業現場

을 案내해 준 江原道 火田整理擔當官室 및 各郡山林課
火田整理係職員에게 深深한 感謝를 드린다.

<引 用 文 獻>

1. 李萬雨. 1974. 李朝時代의 林地制度에 關한 研究
韓國林學會誌 No. 22, 23-47.
2. 山林廳. 1975. 山林施策 45-54.
3. 山林廳. 1975. 全國火田整理關係官會議 77-90.
4. 西水孜郎. 1958. 日本農業經濟地理 351-352.
5. 失嶋仁吉. 1960. 集落地理學 190.
6. 善生永助. 1926. 火田の現状調査資料 3-4.
7. Peatie R. Andorra. 1929. A Study in Mountain Geography. 218-220.
8. 金東洙. 1974. 江原道火田整理事業에 對한 小考,
韓國林學會誌 No. 22, 7-8.
9. 江原道. 1966. 大關嶺山地綜合開發의 方向 125-126.
10. 朝鮮總督府. 1920. 火田調查報告書 4-8.
11. 小田通敏. 1923. 朝鮮部落調查報告書 火田民編

- 2-3.
12. 江原道. 1966. 火田整理史 5-6.
13. 朝鮮山林會. 1930. 朝鮮林務提要 797-800.
14. 池鏞夏. 1964. 韓國林政史 244-246.
15. 江原道. 1974. 火田整理事業報告 19.
16. " . 1965. 山地綜合開發 7個年計劃 33-37,
182-183.
17. " . 1966. 道政現況 30-31.
18. 江原日報社. 1973. 江原年鑑 183-184.
19. 江原道. 1974. 火田整理事業施行指針 24-26.
20. " . 1975. 火田整理事業有關機關協議會議書類
3-26.
21. 山林廳. 1974. 火田整理業務指針書 5-18.
22. 江原道. 1974. 江原道火田整理事業指導指針 5.
23. " . 1974. 江原道綜合開發基本計劃 61-64.
24. " . 1975. 火田整理事業推進體系確立實踐要覽
12-13.
25. " . 1975. 火田整理事業評價分析報告 58-62,
29-32.